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330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 ○ ○ 공 소 청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: ○○○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: ○○○공소청

제 목 : **체류부적당 통보** 검 사 (인)

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,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.

대 상 자	성명 ()		
	생년월일 (세)	성별	남 · 여
	국적		
입 국 (상 륙) 허 가 일 자			
비 고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